



진정한 코난 되려면 탐정법 마련돼야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흔히 탐정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대사다. 코난은 뛰어난 추리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형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의문의 사건들을 척척 해결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탐정의 직무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국가가 공인 탐정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탐정법안」은 2005년부터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경찰 출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과 황은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탐정이 합법적으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공인탐정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공식 탐정 자격증 부재 주먹구구식 운영 지속

탐정 자격증은 탐정에 대한 공신력을 제 공하고 탐정 사무소의 설립 기반으로 여겨 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탐정은 국가 공인 자격이 없으며 민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국공인탐정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약 1만 3205명이 탐정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약 80개의 탐정협회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탐정 자격증을 발급한다. 문제는 협회마다 시험 방식과 탐정 자격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한탐정협회는 만 18세 미만과 전과자, 외국인은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후 「법학개론」, 「범죄학」, 「민간조사 탐정학개론」 세 분야의 시험을 치른 뒤, 8시간의 실무 교육을 받으면 대한탐정협회의 탐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탐정을 관리하는 명확한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불법 기관을 비롯한 여러 탐정 사무소의 활동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공식적인 하나의 협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탐정 사무소 ‘블랙커’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환 탐정은 “처음에는 하나의 협회였으나 점차 분쟁이 발생하면서 나뉘고 있는 추세”라며 “또한 자격증을 통해 얻는 수입도 협회마다 달라 현실적으로 통일은 힘든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나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탐정 사무소 설립은 가능하다. 탐정 자격증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다. ‘수환탐정경호법인’을 운영하는 김수환 탐정은 “과거부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탐정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일본처럼 신고를 통해 탐정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2006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탐정제도가 가장 활성화돼있다. 공인 자격이 없어도 탐정 관련 기관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신고하면 공식적인 탐정 활동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국가 공인 탐정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3년에서 5년간 수사 계통 경력을 쌓은 뒤 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탐정이 될 수 있다.

공식적인 자격 제도의 필요성과 더불어 실무 교육도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김 탐정은 “이론만 마치면 탐정의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론적으로 공부해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나 현장의 실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 교육이 끝난 후 사무소를 직접 차렸을 때 당장이라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여야 한다”며 “탐정 사관학교를 설립해 경찰학교처럼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수가 겸비된 교육생을 배출해 정말 탐정다운



▲ ‘수환탐정경호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형사 출신 김수환 탐정이 사무소에서 당당한 자세로 서 있다.

탐정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활동, 직무범위는 모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 최순호 교수는 탐정을 조사 서비스업이라고 정의한다. 최 교수는 “탐정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극복해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이라며 “탐정은 경찰과 달리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회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탐정은 의뢰인의 의뢰 그 자체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직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개인이 자유롭게 직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 탐정의 직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에서는 탐정 사무소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탐정협회 박민호 탐정은 “현재 대한탐정협회에 소속돼 있는 탐정들은 기업 조사나 사람 찾기, 소송 증거 마련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전·현직 형사나 경찰이 정년퇴직 후 탐정업에 뛰어 드는 경우도 많다. 형사 은퇴 이후 탐정 사무소를 차린 김 탐정은 “전직 형사로서 우리 탐정 사무소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의뢰는 거절하고 있다”면서도 “의뢰인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탐정의 의무기에 벌금을 무는 정도의 상황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 탐정은 흔히 심부름센터와 흥신소(이하 불법 기관)와 동일시 됐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 5항이 개정되며 신용정보회사를 제외하고 누구나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불법 기관과 탐정 사무소의 경계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김수환 탐정은 “해당 법으로 인해 불법 기관 또한 간판에 탐정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

게 됐다”며 “불법 기관과 탐정 사무소를 명칭만으로 경계를 두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최 교수는 “보통 탐정 사무소는 좋은 곳, 불법 기관은 나쁜 곳으로 인식하나 사실 직무 측면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 기관의 어릴 자체가 나쁜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과거부터 쌓여온 인식과 미디어의 영향 탓에 불법 기관을 안 좋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범인 이석준은 불법 기관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주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범승’의 한담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탐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그만큼 국가기관에서 법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전에 범죄와 연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탐정 교육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박 탐정은 “법에 위배되는 의뢰를 받는 불법 기관이 문제”라며 “현재 대한탐정협회는 이를 위해 탐정으로서 지켜야 할 18개의 탐정 윤리 강령을 탐정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화되는 탐정, 인식 개선이 우선

탐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탐정 비교 상담 플랫폼 ‘모두의 탐정’이 지난 2022년 10월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탐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40%가 탐정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대학은 탐정학과를 신설하고 있다. 이번호 탐정전공에서 탐정학과로 승격한 서울디지털대학교에는 경찰, 변호사, 의료인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110명이 지원했다. 동국대학교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탐정법무전공과정을 개설한 이후 2020년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탐정법 전공 박사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동욱 교수는 “탐정 법률 부재로 불법 기관의 불법적 행위



▲ ‘블랙커’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환 탐정이 사이버 의뢰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

와 의뢰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에 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며 “탐정산업의 발전을 통해 사회 안전에도 기여하고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탐정의 업무 범위도 점차 확장되는 추세다. 최순호 교수는 “최근 고양이 탐정이나 마약 탐정 등 다양한 분야의 탐정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탐정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김윤환 탐정이 운영하는 블랙커는 주로 사이버 사건을 의뢰 받고 있다. 김 탐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만큼 해킹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화이트해커가 취하는 방어적 면모와 달리 공격적인 방식으로 해킹과 감염 여부를 점검하고 악성 코드를 발견해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증거를 마련해준다”고 전했다. 현재도 탐정은 다양한 업계로 발을 뻗어가고 있다. 박민호 탐정은 “탐정업계의 미래는 매우 밝다”며 “탐정업이 제도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해결하려는 사명감과 멋진 추리력을 가진 탐정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박소연 기자 muminsy02@uos.ac.kr

아플 때는 쉬어갈 한국 사회로, 상병수당

지난달 19일 아프면실권리공동행동 준비위원회(이하 공동행동)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했다.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가 계기였다. 근로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소득 단절을 우려해 계속 근무에 임했고, 결국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병수당은 1차 시범사업을 거쳐 2차 시범사업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마주한 상병수당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봤다.

2025년 본사업 도입 앞둔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근로자는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중단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파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적절한 소득 수준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유급병

가와 산재보험 역시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지만 유급병가는 주로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과 같은 단기간의 소득만들,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재해만 보장한다는 점에서 상병수당과 구분된다.

상병수당은 총 3단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5년에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7월 시행된 1단계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15세~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사회복지제도를 선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예고하며 지난해 7월에 도입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급여 대상자의 기준이 축소됐다.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소득 계층에게만 보장되는 공적부조 제도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시범사업에서도 선별적 기준은 유지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대기기간과 보장기간 논의 필요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쳤으나 한국형 상병수당에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소득보장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제 노동기구(이하 ILO)에서 대상자의 급여 66.7% 이상을 보전할 것을 권고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보장 수준을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의 60%로 설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상병수당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상병 이전 소득의 50%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건강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건강연구소’ 최홍호 연구원은 “ILO에 가입한 한국은 ILO가 제시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정도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첫 상병수당을 받기까지 대기기간은 긴 반면 보장기간이 짧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ILO는 3일의 대기기간을 권고하나 한국은 7일에서 14일의 대기기간이 소요된다. 급여 보장 기간은 역시 90일에서 120일 사이로

ILO가 ‘상병급여 협약’에서 제시한 최소 기준인 52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단계 시범사업 수혜자인 회사원 A씨는 “상병수당 보장기간은 완전한 회복을 하기엔 너무 짧다”며 “소득 활동을 위해 다시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에서 “아파서 일을 못하는 기간이 상병수당의 보장기간보다 길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인 장애 제도로 넘어가는 기간 사이의 공백으로 소득 상실이 재발하는 문제가 있다”며 “상병수당의 지급기한을 현재 국민연금 장애연금 규정에 맞춰 1년 6개월로 연장해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보장기간을 늘려도 국가에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1년 6개월로 기간을 늘리면 영구 장애로 인정될 수 있어 장애 제도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쉴 근로자를 위해서

한국 상병수당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돼야 할까. 최홍호 연구원은 상병



▲ 지난달 19일 아프면실권리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상병수당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당과 유급병가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독일의 경우 6주의 대기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에도 유급병가를 보장해 주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상병수당 수급 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총 3단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법제화된 상병수당이 근로자의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설해빈 수습기자 shb2751@uos.ac.kr